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2019.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9.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예고의 의의(안 제19조의2 제1항)
- 조례안 예고 기간(안 제19조의2 제2항)
- 의견제출 및 처리 등(안 제19조의2 제3항 ~ 제5항)

나.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80조제4호, 제86조제4호)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의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제4호 중 “깍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제86조제4호 중 “깍연행위”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 ① 의</u> <u>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u> <u>(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한다)에</u> <u>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u> <u>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u> <u>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u> <u>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u> <u>다.</u> <u>② 조례안의 예고 기간은 특별</u> <u>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u> <u>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한 경</u> <u>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u> <u>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장에</u> <u>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u>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u> <u>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u> <u>알린다.</u> <u>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u> <u>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을</u> <u>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2</u> <u>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u>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 -----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음식물 섭취와 <u>깍연</u> 5.·6. (생략) 제86조(방청인의 금지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음식물의 섭취나 <u>깍연행위</u> 5. ~ 8.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담배를 피우는 행위</u> 5.·6.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인의 금지사항)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담배를 피우는 행위</u> 5. ~ 8.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